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무효익 연구

이재성* · 서 일**

〈목 차〉

I. 서론	2. 실증분석 및 결과의 해석
1. 연구의 목적	IV. 법인전환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방향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실무상 측면
II. 법인전환의 이론적 배경	2. 재무상 측면
1. 법인전환의 효익	3. 세무상 측면
2. 선행연구의 요약	V. 결론 및 요약
III. 법인전환의 세무효익에 대한 실증분석	참고문헌
1. 연구의 설계	Abstract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아래로 우리 경제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공업화를 외치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수출주도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품의 양산체제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불균형현상으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환경, 경제, 정부정책¹⁾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져 왔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공업화중심사회에서 소위 서비스중심산업으로 경제양상이 전환되고 기술의 세계화, 수요의 질적 변화, 정부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

*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회계학부 부교수

** (주)전인시스템 이사 & (주)NECKPHONE 감사

1) 도유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유용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 44.

업도 그 활동영역이나 know-how 등에서 현존산업기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민생활측면에서도 의식주를 해결하는 전통적, 원시적 단계에서 고급화, 개성화,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중소기업의 다품종소량생산을 통해서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고도성장과 복지향상은 급변하는 경제환경²⁾ 속에서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경제발전의 주체로 평가되었고 기술적 우위로서 확고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에서 70% 이상을 개인기업이 점유하고 있고 동시에 재무구조면에서 취약성³⁾을 갖고 있는 실정으로서⁴⁾ 경영합리화라는 측면에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해당기업뿐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구체적인 계산은 차제하고라도 현재의 개인기업의 소득세율은 10%~40%의 누진세율이고, 법인기업의 법인세율은 16%와 28%로서 이는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사업자는 개인기업에 비하여 월등히 부담세액이 적은 것이 사실이며,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인기업경영의 합리화방안의 하나로서의 법인전환은 기업조직의 효율적인 개편과 기업운용의 효율성, 대외적인 신용등급의 상향, 자본조달의 용이성, 법인화의 대명제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한 건전한 기업발전과 또한 기업의 객관성유지의 측면에서도(재무, 관리, 세무) 보다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경영전략이 될 것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기존의 각종 문헌과 실제사례분석을 통해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특히 세무상의 절세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짚어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인전환한 현재의 기업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상법과 중소기업법 세법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과 종법이라 일컬어지는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각종 단행본(간행물 등)과 대법원 등의 판례, 국세청 등의 판례와 예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

2) 박정연·신동령, 경영분석, 1992, p. 120.

3) 최재국, 중소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관련세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 1.

4) 재무부, 금융실명제와 향후 정책방향, 1993, p. 5.

생산성본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각종 자료와 문헌들을 토대로 세무회계적 측면과 이론, 실무적인 측면을 모두 검토하는 문헌적 접근방법과 실제의 법인전환사례에서 나타나는 절세효과에 관한 실증적 검증방법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전부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장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 제2장은 법인전환의 제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요약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이미 법인전환된 기업의 절세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법인전환에 따르는 애로사항과 개선방향을 주로 다루었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 및 요약으로서 본 연구에서 검토된 내용들을 요약하여 법인전환의 당위성과 세제상의 우위를 도출하여 끝맺음하였다.

II. 법인전환의 이론적 배경

1. 법인전환의 효익

1.1 법인전환의 필요성

개인기업은 소규모로서 많은 투입자본이 필요치 않으며, 개인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경영하게 되므로 소유와 경영이 독자적이고, 기업의 이윤을 독점⁵⁾할 수 있으며, 비밀의 유지도 용이한 편이다. 그리고 법적, 경제적인 규제가 거의 없기에 많은 기업의 창업은 개인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개인기업은 기업활동이 가계의 활동과 혼합되어 기업실체를 명확히 파악되기 어려우며, 대규모자본의 조달과 노동력의 확보에도 한계가 있고, 대외적인 신인도도 떨어진다. 또한 기업주가 경영활동으로 파생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므로 채무 등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키거나 경감할 수 없다. 나아가서, 기업주의 사망, 교체 등 개인적인 사정이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견전한 기업의 유지, 발전과 존폐마저 개인기업주인 특정인의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 특히, 개인기업은 일정규모 이상이면 소득세의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고액의 조세를 부담하게 됨으로서 사업의 유타 하와 조세회피현상이 나타날 뿐 아니라, 고율의 상속세 등을 의식하여 기업투자를 자체하여 기업규모를 축소하려는 내심으로 이어져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종래

5) 박해석,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무효과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 68.

에는 기업의 부실화로 이어지게 된다.⁶⁾

이러한 개인기업의 단점에 대하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이후의 예상되는 장점⁷⁾으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전한 기업의 유지 및 발전에 보다 유리하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주의 교체, 사망 등 기업주의 개인적인 사정이 기업의 존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법인기업의 경우는 출자자의 개인적 사정이 기업의 존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개인기업과는 달리 법인기업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하여 전문경영인의 활용을 통하여 기업발전을 통한 경영합리화에 보다 유리하다.

둘째로, 기업신용도의 제고가 가능하다.⁸⁾ 법인기업의 대외신용도와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이 신용도가 높다는 사회적 인식에 바탕을 둔다. 기업의 높은 대외신용도는 외부로부터 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계획 경영, 경영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도 상당한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로, 자금조달의 원천을 보다 다양화시킬 수 있다. 법인기업은 다수인의 자본과 노동력을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하는 특징이 있다. 즉 개인기업의 경우 자본조달은 개인기업주의 자기자본과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두 가지 경로로 형성된다. 그러나 법인기업은 개인기업에 비하여 대외신용도가 훨씬 높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자본증자나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채⁹⁾의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도 가능하다.

넷째로, 위험의 분산이 보다 용이하다. 다수인의 자본과 노동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법인기업은 기업의 위험이 다수인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위험이 비교적 낮다.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한도내에서만 유한책임을 부담할 뿐으로서 그 이상의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다.

다섯째로, 세제상의 혜택을 향유하여 절세가 가능하다. 현행 법인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의 차이¹⁰⁾로 인하여 동일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경우 납부하는 부담세액이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활동에 따른 조세의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¹¹⁾

6) 남명수·김대호, *신경영분석*, 1998, pp. 320~322.

7) 정은협,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동기에 대한 실증분석,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 2.

8) 변계운, 법인전환상의 부동산세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 4.

9) 이정규·김동욱, *투자론*, 1997, pp. 34~36.

10) 유현종, 법인전환의 세제효과와 과세통합의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 74.

11) 강경태, *세법개론*, 1998, pp. 184~187.

여섯째로, 보다 원활한 노사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 개인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개인기업의 구성원인 종업원들이 개인기업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업의 경영성과¹²⁾에 따른 분배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법인기업 중 주식회사의 경우는 종업원의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여 종업원이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기업활동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경영성과에 따른 분배도 받을 수 있어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과 아울러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분배심리로 인하여 기업이윤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과세제도차이

앞에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라서 예상되는 절세효과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과세제도차이에서 비롯되어지는 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1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소득의 범위의 차이

법인세법에서는 계속적이고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뿐 아니라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은 모두 과세소득으로 보는 반면에,¹³⁾ 소득세법에서는 소득발생원천별로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¹⁴⁾만을 과세대상소득으로 하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¹⁵⁾

1.2.2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법의 차이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방법으로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소득으로 과세하고 그렇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반면에, 법인세법은 포괄주의 과세방법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하되 세법에 공제, 감면, 비과세로 규정한 것만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한다.

1.2.3 조세채권의 확정방법의 차이

과거 정부는 소득세에 대하여 정부부과결정제도하에 수입금액¹⁶⁾에 대비한 일정

12) 송자·정종암 외 7 원가회계, 1996, pp. 1099~1100.

13) 임상열, 세법개론, 2000, p. 168.

14) 안교석,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제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992, p. 20.

15) 상계서, p. 573.

16) 한국세무사회, 2000년 귀소 표준소득률, 2001, p. 18.

수준 이상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서면조사결정제도를 실시하였으나 1995년의 귀속종합소득세신고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제도¹⁷⁾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납부제도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고 만약, 신고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세액을 확정¹⁸⁾하는 것이다.

1.2.4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차이

개인기업의 과세표준¹⁹⁾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다시 기초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소득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즉 과세표준인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법인에서는 당해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계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를 차감 후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그러므로, 개인기업은 개인사업자의 급여가 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하지만, 법인기업은 대표이사의 급여가 손금으로 반영되므로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는 법인기업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1.2.5 세율구조의 차이

개인기업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10%~40%)에 적용을 받지만, 법인기업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16%, 28%)의 적용을 받는다. 개인사업자의 적용 소득세율은 4단계의 누진세율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적용세율이 높아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아래의 <표 1>은 각 세법의 가산세를 비교한 것이다.

17) 김희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동기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원 논문, 1996, p. 7.

18) 나인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무효과와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원 논문, 1996, p. 26.

19) 이철재, 세법강의(2001), pp. 484~492.

〈표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가산세의 비교²⁰⁾

구분	가산세의 종류	기준금액	개인기업	법인기업
소 득 세 법 및 법 인 세	1.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수입금액	20/100 7/10,000	20~30/100 7~10/10,000
	2. 과소신고가산세	산출세액	20/100	10~30/100
	3.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10/100	20~30/100
	4.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	5/10,000×일수	5/10,000×일수
	5. 원천납부불성실	미납부세액	10/100	10/100
	6. 보고불성실가산세 가. 지급조서미제출, 불명가산세 나. 계산서미교부등불성실	지급금액 공급가액	2/100 1/100	2/100 1/100
법	7. 불병불비가산세	증빙불비금액	10/100	10/100
	8. 영수증미수취가산세	지급금액	1/100	*
	9. 공고불이행	산출세액 수입금액	*	1/100 4/10,000
	10. 기업집단결합f/s 등 미제출가산세	산출세액 수입금액	*	2/100 8/100,000
	11. 주시이동명세서미제출	액면가액	*	2/100
부 가 가 치 세 법	1. 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	1/100	2/100
	2. 세금계산서미교부, 기재불성실	공급가액	1/100	2/100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 미제출, 제출불성실	공급가액	1/100	2/100
	4. 매출처별세, 계, 서합계표 지연제출, 기재불성실	공급가액	5/1,000	10/1,000
	5. 매입처별세, 계, 서합계표 미제출, 기재불성실	공급가액	1/100	2/100
	6.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달신고세액	10/100	10/100
	7.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달납부세액	5/10,000×일수	5/10,000×일수

20) 소득세법 제81조, 158조, 159조 법인세법 제76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적용할 서울²¹⁾면에서는 개인기업은 매출액 및 소득금액의 증가에 따라서 적용세율이 누진적용되므로 조세부담이 많아지지만, 법인기업은 2단계의 단순비례세율이 적용되므로 적용세율면에서는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유리하다.

2. 선행연구의 요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무효익에 관한 논의가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연구 업적으로 나타난 것은 1980대의 초반부터이다. 이후, 다수의 연구가 법인세와 소득 세의 차이비교, 법인전환과 관련된 제세제의 연구, 법인전환을 위한 제반 애로점과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단순한 문헌적 검토나 소수회사의 사례비교방법 등에 한정됨으로서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변계운의 “법인전환상의 부동산세제의 관한 연구(1983,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는 부동산 세제에 대한 문제와 실태를 분석, 비교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현물출자로 인한 부동산 절세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1개회사를 모델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를 비교하고 현물출자의 부동산관련 부담세액을 분석하였다.
- 2) 권기재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관련세제연구(1987,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는 법인전환에 따른 관련세제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제시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법인전환시의 부담세제를 나열하고 현물출자시의 세법상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문헌적 접근방법으로 조세특례법상의 제반문제와 감면세제 등을 검토하였다.
- 3) 염동완의 “법인전환 관련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1990,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는 법인전환시의 전환방법과 개선방안을 나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적 접근방법으로 법인전환유형과 부담세액(면제, 감면 등)을 나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한다고 전제되어 있으나 내용은 과세표준에 동일수치를 대비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다.
- 4) 최재국의 “중소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관련세제(1991,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촉진을 위한 법인전환관련세제를 검토하

21) 전계서, p. 3.

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문헌적 접근방법으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의 유형과 방법을 나열적으로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5) 유현종의 “법인전환의 조세효과와 과세통합의 연구(1992,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는 법인세의 배당과정에서 소득세를 다시 부과함으로써 야기되는 모순과 불공평한 과세제도를 직시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로 문헌적 접근방법을 통해서 소기업위주의 부담세액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세제상 차이를 비교하고 법인세의 배당으로 인한 이중부담세제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6) 안교석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무효과에 관한 연구(1992,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는 회계 및 세무체계상의 법인전환문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3개회사를 모델로 하여 사례연구를 통한 가처분소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동일한 과세표준하에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검토하고 있다.

7) 도유조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유용성에 관한 연구(1993, 경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기업에서의 법인전환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있다. 그러나 문헌적 접근방법에 한정하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유용성과 문제점을 나열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8) 박해석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무효과에 관한 연구(1994,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을 나열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개회사를 모델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과세표준이 26,000,000원 이상이면 법인기업이 세제상 유리하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법인전환효과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9) 김진영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관한 세제의 연구(1994,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관련된 세법규정을 검토하고 사례를 통한 감면방법을 비교·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도출하고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합리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1개회사를 모델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감면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10) 염동권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효과(1994,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는 법인전환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의 세무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3개사를 모델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개인기업을 법인전환에 따른 절세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 11) 나인찬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무효과와 개선방안(1996,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은 4개회사를 모델로 사례연구와 실증분석을 통해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제반문제와 유용성의 검토하고 세제상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인전환의 기대효과를 연구하여 법인전환의 판단에 유용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데 개인기업으로 존속하는 것보다 법인으로 존속하는 것이 고용증대효과, 경제성장효과 등에서 유용한 점이 많다고 결론짓고 있다.
- 12) 김희수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동기에 관한 실증적 연구(1996,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는 개인기업으로 출발한 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동기와 실제전환후에 해당목적이 달성되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인전환한 76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한 동기가 무엇이며 법인전환후에는 어떠한 이점이 있었는가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SPSS/PC를 이용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및 일원분산분석을 병행실시함으로써 확인하고 있다.
- 13) 정은협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동기에 대한 실증분석(1996,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학위논문)”에서도 법인전환시의 동기요인을 검토하였는데, 여기에는 법인전환시의 매출액과 업종, 조세지원내용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문헌적 조사를 통한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여 분석하고 있다.
- 14) 최정우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절세효과(1997,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는 동일한 소득금액에서의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부담세액 차이와 법인전환시의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절세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개회사를 모델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부담세액과 세율차이를 분석하였다.
- 15) 황병욱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효과에 관한 연구(1998,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당해시점에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하여 기대효과를 검토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2개회사를 모델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동일한 과세표준하에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분석하였다.
- 16) 조수점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무효과에 관한 연구(1998, 동의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는 개인기업의 법인으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관련부담세액 등의 제반세무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개회사를 모델로 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동일한 소득금액하에 부담세액과 가처분소득을 비교·분석하였다.

III. 법인전환의 세무효익에 대한 실증분석

1. 연구의 설계

흔히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주들은 법인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부담액이 종합소득세보다 비교적 적다는 생각은 공감하고 있으나 과연 부담세액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계속기업을 기준으로(21개기업) 조사하였으며 법인전환의 특성상 매년, 매월 말일을 개인기업의 폐업시점으로 맞지 않고 또한 법인기업의 개업일도 매년, 매월의 1일로 그 시기적 비교시점이 맞지않아 기법인으로 전환된 기업의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법인전환기업의 개인기업으로서의 소득세 부담세액, 법인전환후의 법인으로서의 법인세 부담세액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2000년도(표본조사대상기업은 회계기간이 모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임) 중에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기간(1998년, 1999년, 2000년)을 포함하여 3개의 사업년도²²⁾를 표본조사대상기간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다 심층적인 실증연구를 위하여 더 많은 사업년도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세법상 장부의 비치, 보관기간이 5년이므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술한 방법으로 표본선정하였다.

2. 실증분석 및 결과의 해석

2.1 표본기업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아래의 <표 1>은 표본기업의 개시자본금과 창업비용²³⁾ 중 법인설립 비용을 <표 2>는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계산근거를 작성하였다.

22) 전계서, pp. 134~135.

23) 전계서, p. 366.

〈표 1〉 표본기업의 개시자본금과 법인전환비용

(단위 : 원)

차례	업체명	법인전환시 자본금	법인전환비용
1	주/표본1기업	400,000,000	2,350,000
2	주/표본2기업	400,000,000	2,150,000
3	주/표본3기업	350,000,000	2,050,000
4	주/표본4기업	50,000,000	410,000
5	주/표본5기업	500,000,000	3,180,000
6	주/표본6기업	600,000,000	3250,000
7	주/표본7기업	5,000,000	360,000
8	주/표본8기업	300,000,000	1,780,000
9	주/표본9기업	300,000,000	2,000,000
10	주/표본10기업	100,000,000	770,000
11	주/표본11기업	500,000,000	2,980,000
12	주/표본12기업	1,000,000,000	7,980,000
13	주/표본13기업	400,000,000	2,650,000
14	주/표본14기업	50,000,000	680,000
15	주/표본15기업	200,000,000	1,620,000
16	주/표본16기업	100,000,000	900,000
17	주/표본17기업	200,000,000	1,400,000
18	주/표본18기업	100,000,000	810,000
19	주/표본19기업	20,000,000	640,000
20	주/표본20기업	300,000,000	2,000,000
21	주/표본21기업	100,000,000	1,000,000
이상 21업체의 계		6,050,000,000	40,960,000

* 단, 채권구입 후 처분유무에 관계없이 법무사의 수수료와 공증료, 정관작성비 등의 제증빙을 근거로 작성함.

〈표 2〉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계산근거(2000년 기준)

법인세법	구분	소득세법
***	과세표준	***
1억 이하 16% 1억 초과 28%	세율	1천만 이하 10% 1천만 초과 4천만 이하 20%(1,000,000) 4천만 초과 8천만 이하 30% (5,000,000) 8천만 초과 40%(13,000,000) (괄호는 누진공제액임)
***	산출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규정	세액공제 경감세액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규정
최저 한세보다(조세특례제한법) 총 부담세액이 많아야 함	총부담세액	최저 한세보다(조세특례제한법) 총 부담세액이 많아야 함
각종소득공제, 세액공제, 경감세액, 각종준비금 등을 공제후 과세표준 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2%) 이 상은 공제감면 불가함	(최저한세)	각종소득공제, 세액공제, 경감세액, 각종준비금 등을 공제후 산출세액 의 40% 이상은 공제감면 불가함

* <표 3>은 법인전환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표 4>는 법인전환 후 2개년도를 누적계산하였으며, <표 5>는 법인전환 후 3개년도를 누적계산하였다. 또한 “집단 B”는 법인전환 기업이므로 법인세를 실제 납부한 세액과 법인전환비용²⁴⁾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였고, “집단 A”는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미전환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각 세법을 적용한 부담세액을 추정계산하여 계상된 금액임.

24) 최정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절세효과(1997),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

〈표 3〉 법인전환에 따른 절세효과표(법인전환 당해 연도)

(단위 : 원)

차례	업체명	법인전환전 소득세부담액	법인전환후법인세와 전환비용	차 액
1	주/표본1기업	42,467,510	24,690,665	17,776,845
2	주/표본2기업	28,578,547	16,939,273	11,639,274
3	주/표본3기업	65,681,658	41,815,724	23,865,934
4	주/표본4기업	12,439,920	9,711,291	2,728,629
5	주/표본5기업	41,951,221	25,547,330	16,403,891
6	주/표본6기업	30,438,691	19,626,622	10,812,069
7	주/표본7기업	25,778,691	15,871,371	9,907,320
8	주/표본8기업	145,904,153	94,662,118	51,242,035
9	주/표본9기업	277,625,452	149,865,290	127,760,162
10	주/표본10기업	36,248,838	20,852,420	15,396,418
11	주/표본11기업	148,399,637	94,743,476	53,656,161
12	주/표본12기업	52,616,326	42,098,828	10,517,498
13	주/표본13기업	44,215,257	31,001,480	13,213,777
14	주/표본14기업	1,056,129	2,324,903	-1,268,774
15	주/표본15기업	50,091,844	33,784,291	16,307,553
16	주/표본16기업	5,377,321	6,001,867	-624,546
17	주/표본17기업	20,421,139	14,688,455	5,732,684
18	주/표본18기업	10,999,256	9,342,936	1,656,320
19	주/표본19기업	2,285,462	3,268,369	-982,907
20	주/표본20기업	25,979,256	15,814,184	10,165,072
21	주/표본21기업	26,516,239	17,150,514	9,365,725
이상 21개업체의 합계		1,095,072,547	689,801,407	405,271,140
업체당 평균액		52,146,311	32,847,686	19,298,625

〈표 4〉 법인전환에 따른 절세효과표(법인전환후 2개년 누적)

(단위 : 원)

차례	업체명	법인전환전 소득세부담액	법인전환후법인세와전 환비용	차액
1	주/표본1기업	74,458,263	41,186,041	33,272,222
2	주/표본2기업	56,790,702	31,545,350	25,245,352
3	주/표본3기업	104,141,374	66,597,105	37,544,269
4	주/표본4기업	19,213,174	15,929,894	3,283,280
5	주/표본5기업	87,912,278	51,065,208	36,847,070
6	주/표본6기업	64,917,652	37,366,102	27,551,550
7	주/표본7기업	78,877,297	50,140,395	28,736,902
8	주/표본8기업	250,290,406	163,449,641	86,840,765
9	주/표본9기업	369,151,613	201,557,082	167,594,531
10	주/표본10기업	64,918,339	35,687,170	29,231,169
11	주/표본11기업	394,607,704	232,201,525	162,406,179
12	주/표본12기업	88,820,354	67,341,703	21,478,651
13	주/표본13기업	58,109,528	41,078,424	17,031,104
14	주/표본14기업	2,281,109	4,104,887	-1,823,778
15	주/표본15기업	157,312,114	105,938,480	51,373,634
16	주/표본16기업	8,249,472	9,099,588	-850,116
17	주/표본17기업	58,456,252	38,413,034	20,043,218
18	주/표본18기업	16,864,596	14,835,208	2,029,388
19	주/표본19기업	2,660,752	3,868,834	-1,208,082
20	주/표본20기업	44,418,482	27,625,059	16,793,423
21	주/표본21기업	33,270,664	24,731,467	8,539,197
이상 21개업체의 합계		2,035,722,125	1,263,762,197	771,959,928
업체당 평균액		96,939,148	60,179,152	36,759,996

〈표 5〉 법인전환에 따른 절세효과표(법인전환후 3개년 누적)

(단위 : 원)

차례	업체명	법인전환전소득세부담액	법인전환후법인세와 전환비용	차액
1	주/표본1기업	93,960,759	52,020,206	41,940,553
2	주/표본2기업	69,712,533	44,467,181	25,245,352
3	주/표본3기업	149,753,237	92,241,100	57,512,137
4	주/표본4기업	30,860,321	24,666,846	6,193,475
5	주/표본5기업	132,880,941	74,049,548	58,831,393
6	주/표본6기업	74,288,119	44,388,271	29,899,848
7	주/표본7기업	121,972,353	77,406,934	44,565,419
8	주/표본8기업	269,987,961	174,822,704	95,165,257
9	주/표본9기업	424,681,729	235,708,148	188,973,581
10	주/표본10기업	86,170,958	48,554,477	37,616,481
11	주/표본11기업	591,673,451	360,520,746	231,152,705
12	주/표본12기업	111,297,718	81,532,648	29,765,070
13	주/표본13기업	62,204,024	45,143,621	17,060,403
14	주/표본14기업	3,290,184	5,712,147	-2,421,963
15	주/표본15기업	160,441,938	109,242,339	51,199,599
16	주/표본16기업	12,889,037	13,611,240	-722,203
17	주/표본17기업	135,099,633	89,163,400	45,936,233
18	주/표본18기업	23,800,831	21,184,196	2,616,635
19	주/표본19기업	2,660,752	3,868,834	-1,208,082
20	주/표본20기업	58,478,057	39,598,371	18,879,686
21	주/표본21기업	44,399,183	33,333,344	11,065,839
이상 21개업체의 계		2,660,503,719	1,671,236,301	989,267,418
업체당 평균액		126,690,653	79,582,681	47,107,972

2.2 결과의 해석

전술한 자료에 의하여 각각의 법인전환에 따른 절세액의 유의적 차이를 t-test 분석결과 <표 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6〉 T-test 결과표

기간	평균값	test 년도	t-value	p-value
1개년도	집단 A 52,146,311	2000년	0.806	0.430
	집단 B 32,847,686			
2개년도	집단 A 96,939,148	1999년+2000년	3.604	0.002
	집단 B 60,179,152			
3개년도	집단 A 126,690,653	1998년+1999년+2000년	3.611	0.002
	집단 B 79,582,681			

상기 t-test 결과표(유의수준 95%)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당해 연도의 분석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전환후 2개년도와 3개년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당년도(2000년)의 경우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은 법인전환비용이 장래의 효익(기업회계기준은 창업비로 규정함)이나 당년도의 법인세와 법인전환비용이 합산되어 나타난 결과로 추정되고 있으며, 2개년도 누적분과 3개년도 누적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절세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IV. 법인전환의 애로사항과 개선방향

1. 실무적 측면

개인 중소기업주가 자기 개인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인전환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도 우선은 복잡한 절차²⁵⁾와 구비서류의 과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단적인 예로 하나의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하려고 하면 그 개인기업의 거의 모든 경영조직의 인력이 투입되어야 실현 가능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법인전환에 관련되는 전문적 관련자 역시 공인회계사, 공인감정사, 사법서사, 법원관련인(검사인²⁶⁾) 등이 있다. 따라서 개인기업주의 입장에서는 법인전환의 복잡한 절

25) 황병욱,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효과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원논문, 1998, p. 64.

차가 법인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전환을 규제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개인기업을 법인화하는 과정에는 10단계 이상의 절차와 30여 가지 이상의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등 개인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비용과 시일이 소요된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있어서 검사인의 설립경과 조사와 관련하여 오랜 시간과 이중서류의 구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주에게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주는 결과이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중 세무상 부당이익²⁷⁾ 계산에 따르는 불이익과 금융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와 선임한 검사인에 의하여 다시 출자의 합리적인 적정성과 여부를 실사(확인)하는 설립경과 조사가 실시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을 두고 중복과정을 거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규제나 감시, 감독보다는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인전환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에 공하는 자산 중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나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²⁸⁾이나,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의 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시가²⁹⁾를 기초근거로 하고, 이를 제외한 사업에 관련한 자산 및 부채 등의 평가는 회사에 비치된 제증빙을 근거로 공인회계사,³⁰⁾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이 확인 실사하여 시간 및 절차를 대폭적으로 간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전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금융배려, 신기술개발지원 등을 중소기업법을 근거로 하여 중소기업의 업무지원 규정을 세무관서나 지방행정관서(예를 들면 중소법인지원과³¹⁾)에 만들어 두고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의 탁월한 상담과 지도요원을 상주시켜 법인전환과 더불어 기업경영활동의 획기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개인중소기업의 영세성과 경영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무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하여도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혈연관계인 가족경영의 틀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개인기업 형태이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세미나 등이 필요할 것이다.

26) 권기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관련세제 연구,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p. 24.

27) 전개서, p. 640.

28) 행정자치부,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2001. 1. 1. 시행)

29) 권동용,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2001, pp. 657~658.

30) 이병소, 현대회계감사, 2001, p. 19.

31) 이충환, 비영리기관회계, 2000, pp. 141~142.

2. 재무적 측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조세부담의 감소라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안이지만, 그보다는 기업의 폐쇄적 경영체질개선과 영속적 계속기업으로 기업체질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인기업에 있어서 매출액이 과소계상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업외 비용인 금융비용 등이 적극적으로 재무제표³²⁾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므로 건전한 기업의 유지, 발전에 수반되는 객관성이 법인기업이 우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자가 지면의 재무비율분석 중 부채비율을 검토해 본 결과 부채비율이 개인기업에 비하여 법인기업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곧 개인기업이 계상하지 못하는 금융비용이 있다는 그것 외에 법인기업은 금융권을 통한 자금의 조달이 개인기업과 비교하여 우월하다는 결과로 판단된다.

법인전환을 조세의 절약이라는 점보다는 기업경영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기업주들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거래은행 등에서는 법인기업에 대하여 여신이자율³³⁾ 등에 차등을 두어 우대토록 하고, 재무구조의 건실화 정책 및 재무비율의 자료를 기업주가 적극적으로 기업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시 담보물에 의한 대출보다는 기업의 재무제표 및 기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차입)거래시의 심사방법³⁴⁾도 대폭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업신용평가기관을 활성화하거나 공인된 자로 하여금 기업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하여 보다 발전적인 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서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경영관리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3. 세무적 측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관련한 세무상의 문제는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의 출자시 감정평가문제와 더불어 법인전환에 따른 개인기업주의 부담세액과 법인기업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문제이다. 여기에는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와 법인기업의

32) 임종곤, 비율분석 및 재무비율해석, 2001, pp. 4~7.

33) 안영일, 부도채권 회수기법과 전략적 채권관리 실무, 이화경영연구소, 학구채권관리교육원, 1999, p. 23.

34) 김용국, 신용평가 분석 및 방법, 2001, p. 31.

법인세, 법인전환 개인기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³⁵⁾ 취득세, 등록세 등과 관련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들 수 있다.

첫째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측면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대개의 개인사업자들은 법인기업이 조세의 담세액 부담이 개인기업에 비해 훨씬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한 판단하에 개인기업주들은 법인전환의 가장 큰 비중을 조세의 절약을 동기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업종과 동일한 소득금액일 경우 기업의 조직형태에 따라서 조세부담이 차등된다면 조세의 공평성이라는 대명제 앞에 중요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세무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기업조직 유형에 따른 관리보다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사실과 동일한 소득금액하에서는 세금의 담세액이 같다는 인식하에 조세형평을 해소하여 기업의 조직유형에 따른 조세부담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양도소득세의 측면에서 볼 때, 개인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을 출자하여 법인기업을 설립한 대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는 재산의 실질적, 유상이전으로 보기보다는, 주식으로의 소유형태를 변경(교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법인전환시의 출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현행 비상장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용 자산을 출자하여 법인기업을 설립시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 하도록 하고 출자대가로 교부받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도록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세만은 신고납부제도가 아닌 정부부과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현행부가가치세법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등을 포함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개인기업의 법인화에 직접적인 제약은 없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재고재화가 적정하게 법인기업으로 출자되었는가에 대한 사후관리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법인전환 시점의 재고량이 장부에 의존함으로서 재고재화에 대한 분식회계처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상법상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건전한 기업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결과는 법인기업의 매출누락을 통하여 개인 기업주의 부당한 이익을 주기

35) 김진영,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관한 세제의 연구,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 39.

때문이다.

넷째로 등록세를 살펴보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현물출자자산 중 등록을 요하는 자산에 대하여서는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자산과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해서만(현물출자, 통합)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시의 등록세는 전액 감면되며, 동 법 제113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규정하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사업용 자산³⁶⁾에는 비업무용 승용차는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을 제공되고 있는 승용차에 대하여서도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하여 조세감면을 동일하게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취득세의 경우에서도 업무용에 제공되고 있는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동일한 감면을 받아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요약

기업이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하나의 유기체³⁷⁾라는 관점에서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그 목적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나, 기업의 조직이나 규모가 확장된다면 개인단독으로 기업경영을 감당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지므로 이는 개인기업주들로 하여금 법인전환을 검토하게 하는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검토되어진 바와 같이, 조세적 측면에서 법인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기업의 조세부담률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또한, 대외공신력의 제고, 기업의 장기적 발전, 자본조달의 다양화, 노사관계의 원활화와 같은 경영합리화의 중요한 방안으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 이루 어질 수 있다.

그러나, 법인전환³⁸⁾시에 나타나는 실무적, 재무적 및 세무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애로사항이 우선 개선, 정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첨부서류의 이중제출, 공인회계사, 공인감정사, 검사인(변호사)등의 업무의 이원화, 복잡하고 많은 준비서류

36) 염동완, 법인전환 관련세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 86.

37) 조수점,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무효과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 56.

38) 전계서, p. 101.

등의 대폭간소화를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동일한 과세표준하에서 개인기업과 비교하여 법인기업은 절세효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매결산기마다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을 각 주주들에게 일정액의 실지배당을 실시한다면 과연조세의 부담이 개인기업의 소득세보다 월등히 적다는 점은 의문시된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표본기업을 선별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대표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표본기업은 모두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표본기업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한계를 가진다. 동시에, 법인전환시의 애로개선방안의 제시에 있어서도 중요성 및 우선순위확정 등의 체계적 제시에서 미흡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이후의 과제로 삼는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1. 강경태, 세법개론(1998), 도서출판홍.
2. 구본주(200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중소기업의 통합, 한국세정신문사.
3. 권강웅(2001), 지방세법해설, 조세총람사.
4. 권동용(2001), 양도소득세실무해설, (주)광교.
5. 김기범(1999. 11),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세무대책, 월간경리.
6. 김의효(2001), 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
7. 남명수 · 김대호(1998), 신경영분석, 삼영사.
8. 노태주(2000), 기업합병과 세무, 광교TNS.
9. 박만희(2001), 소득세의 실무, 동우문화사.
10. 박정연 · 신동령(2000), 경영분석, 다산출판사.
11. 신도현(1999), 세무회계연습, (주)조세통람사.
12. 신찬수 외(2001), 법인세신고서작성실무, 행법사.
13. 이광재(2001), 상속 · 증여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14. 이기수(1998), 회사법, 신영사.
15. 이병소(2001), 현대회계감사, 도서출판사 청람.
16. 이정규 · 김동욱(1997), 투자론, 무역경영사.
17. 이철재(2001), 세법강의, 세경사.
18. 이충환(2000), 비영리기관회계, 법문사.
19. 이향수(2001), 법인세실무, 경제법률사.
20. 정용근(1997), 최신고급회계, 무역경영사.
21. 조달영 · 김선호(2000), 법인결산신고실무, 조세통람사.
22. 최태규 · 이철호(200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실무, 한국재정경제연구소.
23. 한장석(2001), 부가가치세01, (주)광교.
24. 황일순 외 2(1999), 양도소득세계산실무, 세경자료사.
25. 국세청(2000), 법인종합관리규정.
26. 대한상공회의소(1997),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제도 개선연구.
27. 삼일회계법인(2001), 세법전, 삼일총서.
28. 삼일회계법인(2001), 기업회계관련규정집.

29. 안전회계법인(2001), 세법전, 안전조세법전.
30. 중소기업청(1998), 벤처기업지원총람.
31. 한국세무사회(2001), 표준소득률.
32. 小官一慶(2001), 캐시플로경영, 21세기북스.

[국내논문]

1. 권기재(1987),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관련세제연구,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2. 김진영(199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관한 세제의 연구,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3. 김희수(1996),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동기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4. 나인찬(1996),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무효과와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5. 도유조(199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유용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경영대학원.
6. 박해석(199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무효과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7. 변계운(1993), 법인전환상의 부동산세제의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8. 안교석(199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무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9. 염동권(199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효과,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0. 염동완(1990), 법인전환 관련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1. 유현종(1992), 법인전환의 세제효과와 과세통합의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2. 정은협(1996),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동기에 대한 실증분석,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13. 조수점(1998),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세무효과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14. 최재국(1991), 중소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관련세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15. 최정우(1997),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절세효과,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16. 황병욱(1998),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효과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Abstract

The Empirical Research on Tax Effect with the Cooporate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Lee, Jae-sung · Seo, il

The form of company divides private and coporate companies. In general, private company has direct connection with owner's fortunes. On the contrary, cooporate company is established by a group of people who invest capital funds on their company and has an independent character.

In the case of private company, their are many merits that owner can obtain all the benefits without divisions. However, the owner can mix up the control of accounting between public and private matters. As a result confusing, it is difficult to estimate financial situation of company and is limited to fund supply. Futhermore, owner has unlimited liabilities with law credit as a social cognition. Especially, the government tries to induce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into coorporation one on the basis of benefits of tax and so on.

In those situation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management benefits with the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into cooporate one focusing on the related tax reduction effect. To do this, I have reviewed all of the related textual achievements and tested the real significancy of tax reduction effect of conversion empirically.

Finally, I have concluded that the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into coporate one has many benefits including significant tax reduction effect. In other side, I have considered and reviewed many difficulties related conversion privated company into cooporate one and suggested some improvements as results.

This thesis is comprises 5 chapters as follows;

The first chapter explains purposes and methodologies and extents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deals the theoretical basis of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into corporate one and corporates diverse benefits and types and processes of conversion. The preceding research achievements are also reviewed in this chapter.

The third chapter deals empirical testing on the real tax reduction effect of the conversion. The analysis is proceeded through t-test of difference of tax between pre and after conversion. The result is presented so positively that I can conclude that corporate conversion of private company has real benefit of tax reduction.

The forth chapter deals the difficulties and improvements related with conversion. They are considered and reviewed at various aspects such as practical, financial and tax aspect.

In fifth chapter, I summarise all of the significant points of this study and have conclusions in various aspects at last.

In final point, this study is not enough in sample numbers and sample collecting area for empirical testing of significant tax reduction effect of corporate conversion and research of more foreign achievements. Those are remained as continuing future studies.